

제 728 호

1979. 8.1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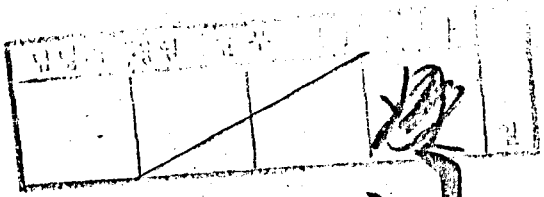
발행인 : 서울특별시시장 정 상 친

편집 : 문화공보관 김 인 동

전화 75-7834
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
전화 75-609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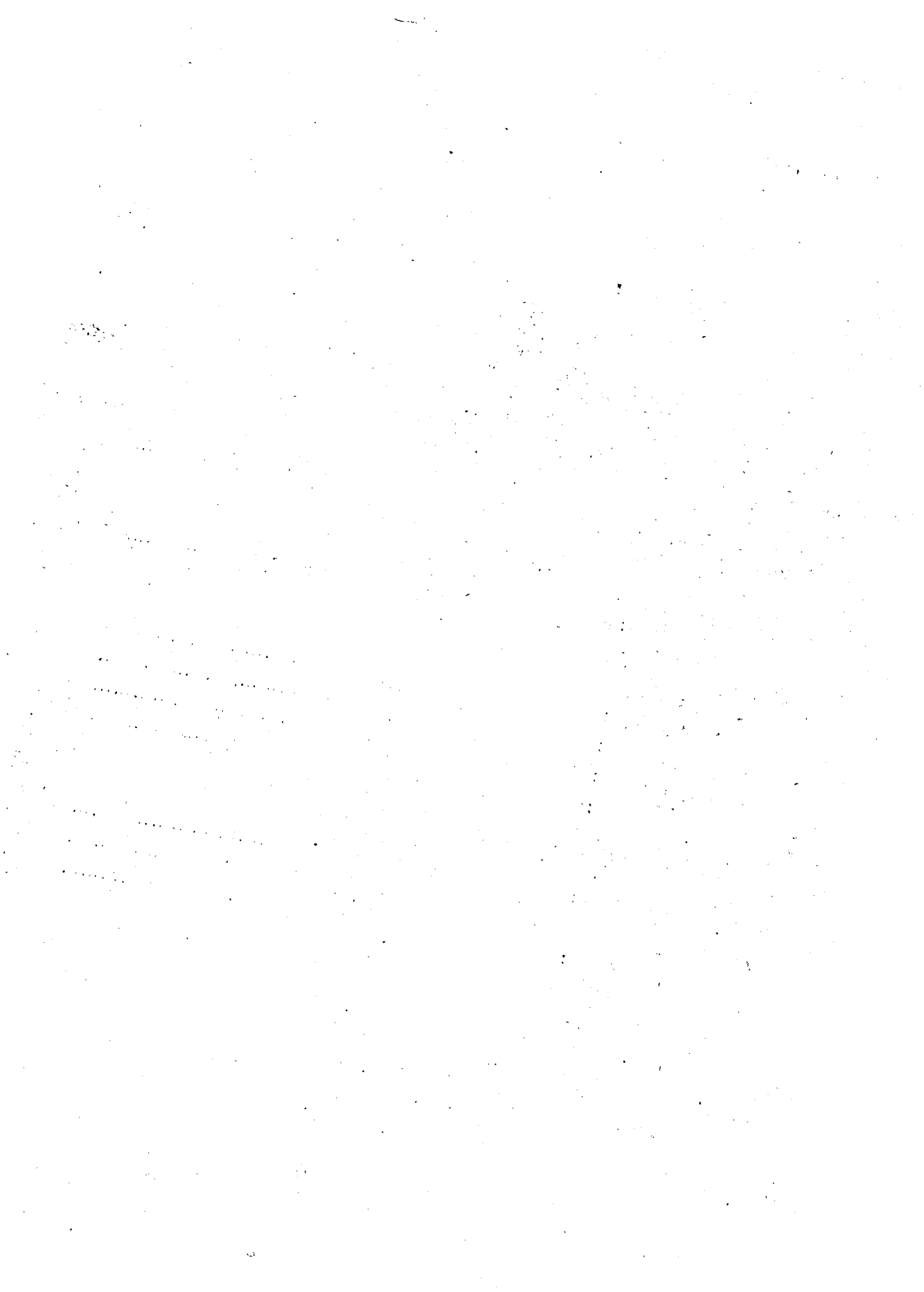


시 보

차 례

◎ 조	례		
제 1349 호 :	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	3
◎ 규	칙		
제 1815 호 :	서울특별시계약심사위원회규칙중개정규칙	3
◎ 고	시		
제 369 호 :	도시계획시설 (녹지) 지적승인	4
제 370 호 :	도시계획시설 (도로) 변경	4
제 371 호 :	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	5
제 372 호 :	도시계획시설 (공용의청사) 지적승인	6
◎ 공	고		
제 275 호 :	제 2 종전기공사업민허취소공고	6
제 284 호 :	도시계획사업 (유수지) 실시계획공람공고	7
제 285 호 :	도시계획사업 (여객자동차정류장) 완료공고	8
	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		
	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		

서울특별시

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받 얻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79년 8월 18일

서울특별시시장 정 상 천 [인]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1349 호

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
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3 조 중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(2) 지정도매인은 도매시장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하자 및 중매인에게 각각 위탁상장 수수료 수입의 1,000분의 150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이 경우 출하자에 대하여는 장려금 지급 해당액을 위탁 상장 수수료에서 사전에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규 칙

서울특별시 계약심사위원회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1979년 8월 18일

서울특별시시장 정 상 천 [인]

◎ 서울특별시규칙 제 1815 호

서울특별시계약심사위원회
규칙중개정규칙

서울특별시계약심사위원회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 중 제 1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5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 88 조의 2제 1항 및 제 2항이나 제 109 조 제 1항 제 1호, 제 7호, 제 8호 및 동조 제 2항 (연고지명 경쟁의 경우에 한한다) 또는 제 112 조 제 1항 제 1호, 제 3호, 제 12호, 제 14호, 제 16호, 제 17호, 제 21호 및 제 28호 내지 제 3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, 지명경쟁, 또는 수의 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안의 합법성과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369 호

도시계획시설(녹지)지적승인

1. 서울시 고시제 429 호(78.8.26)로 결정 고시된 당시관내 도시계획시설(녹지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

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3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호(77.3.16)의 권한위임 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 8. 20

서울특별시장

○ 시설녹지 지적승인 조서

구분	시 설 명	위 치	면 적 (㎡)	비 고
신 설	경춘제 1 녹지	월계동 313 일대	13,500	
"	경춘제 2 녹지	하계동 340-공능동 29	54,000	
"	경춘제 3 녹지	하계동 340-공능동 48 5	12,500	
"	경원제 5 녹지	방학동 317	1,650	

별첨 도면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370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변경

1. 당시관내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(77.3.16)의 권한위임 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(폐지)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도시계획 2과와 관할 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 8. 20.

서울특별시장

○ 노선조사								
구분	등급	유별	번호	폭 원	연 장	기 점	종 점	비 고
기 정	법 경	소로	1	10 m	200 m	명 일동산 47	암사동산 48	폐 지
"	"	"	2	8	330	" 391	" 345	"
"	"	"	"	"	450	" 산 48	" 404	"
"	"	"	"	"	326	" 산 44	" 387	"
"	"	"	"	"	202	" 산 54	" 산 46	"
"	"	"	3	6	120	암사동산 42	" 372	"
"	"	"	"	"	"	"	" 351	"
"	"	"	"	"	350	" 산 44	" 353	"
"	"	"	"	"	330	" 산 48	" 351	"
"	"	"	"	"	170	" 351	" 345	"
"	"	"	"	"	268	" 349	" 산 46	"

별첨 도면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371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
지적승인

1. 시고시 제 467 호(78.9.12) 로
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된 면목국
교 일원등 3개소 지역에 대하여
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
시 제 41 호(77.3.16) 관한 위임

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
2과와 동대문구 도시정비과 및
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
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 8. 22.

서울특별시장

가. 도로조서								
구분	등급	유별	번호	폭원	연장	기 점	종 점	비 고
신 설	소로	2		8	400	면목동 212-9	면목동 95-29	
"	"	"		"	110	" 1274	" 1169	
"	"	"		"	100	" 1234	" 1240	
"	"	"		"	70	" 210	" 209	
"	"	"		"	360	" 359	" 107-1	
"	"	"		"	210	" 324	" 1186	
"	"	"		"	100	" 108-2	" 300-2	
"	"	"		"	230	전농동 60-33	전농동 88-7	
"	"	"		"	310	" 35-1	" 59	
"	"	"		"	100	" 46-28	" 55-38	
"	"	"		"	210	" 60-22	" 55-9	
"	"	"		"	200	" 55-9	" 72	

별첨 도면 생략

◎ 서울특별시고시 제 372 호

도시계획시설(공용의청사)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1호(79.3.4)로
결정된 도시계획시설(공용의청사)을
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고 도시
계획법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

고시 제 41 호(77.3.16)의 권한
위임 규정에의거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
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
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 8. 22

서울특별시장

가. 도시계획시설(공용의청사)지적승인조서

구분	종 류	위 치	면 적	비 고
신설	공용의청사	강서구등촌동298의5	955.3평	

별첨 도면 표시와감음(도면생략)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275 호

제2층진기공사업면허취소공고

진기공사업법 제 31.조 제 3호의 사유

로 전기공사업면허가 취소되었기 동
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
같이 공고한다.

1979년 8월 2일

서울특별시장

종별	면허번호	업체명	대표자	소재지	면허실효일자	사유
제2종	155	(합)새화전기 기업사	박한구	종로구 홍지 동 115-5	79,8,2	제31조 3항(1 년이상 휴업)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284 호

도시계획사업 (유수지) 실시
계획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358 호

(79.8.8)로 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 승인된 도시계획 시설 (유수지) 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 사업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2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하수국 하수시설 2과와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

및 이해관계인에 보인다.

1979. 8

서울특별시장

(공람개요)

1. 사업시행지 : 강서구 염창동 503번지일대
2. 사업의종류 : 도시계획사업 (유수지)
명칭 : 염창유수지 배수펌프장
3. 사업의규모 :
시행면적 : 28,810 (8,715평)
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
5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년월일
가. 사업착수일 : 1979.8.나. 준공예정일 : 1979.12.31
6. 사용토는 수용한 토지
7. 토지소유자 주소 설명

토 지 조 서

번호	지번	지목	지적	소유자	비고
1	강서구 염창동 18-7	구거	499㎡	국유	

번호	지번	지목	지적	소유자	비고
2	강서구 임창동 18-11	구거	53	국유	
3	" 18-9	"	99	"	
4	" 18-13	"	294	양천수리조합	
5	" 8-21	제방	294	양동농지개발조합	
6	" 17-1	"	119	양동농지개발조합	
7	" 19-8	구거	31	국유	446㎡ 중 지적분할요
8	" 18-3	"	144	양천수리조합	149 "
9	" 17-5	"	25	양동농지개발조합	76 "
10	" 17-4	"	8	양동농지개발조합	17 "
11	" 17-2	"	6	"	10 "
12	" 8-23	제방	458	"	579 "
13	" 8-25	"	1026	"	2337 "
14	" 18-6	구거	42	국유	235 "
15	" 18-14	"	51	"	853 "

○ 서울특별시 공고 제 285 호

다 음

도시계획사업 (여객자동차정류장)
완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116(79.3.14)호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된 도봉구 창동 665-4호 영진교통주식회사 부지 정지 공사가 완료 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57 조 2항 및 제 8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한다.
2. 관계 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

1. 사업 시행지 -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65의 4호
2. 사업의 종류 - 도시계획사업 (여객자동차 정류장)
영진교통 주식회사 시내버스 주차장
3. 사업의 규모 및 면적 - 2,653㎡ (802.6평)
4. 사업 시행자 주소, 성명 -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503-11호 영진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영식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- 79.3.21 - 79.8.15
6. 공사완료 도면 - 생략

1979.8.21

서울특별시장